

강릉원주대학교·환동해산업연구원 학술·연구교류 협약서

강릉원주대학교(이하 “강릉원주대”라 한다)와 환동해산업연구원(이하 “환동해산업연”이라 한다)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수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학술·연구 활동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과학기술 인력, 학술정보, 시설 등의 상호 교류 및 활용과 연구사업의 협력을 통한 학·연 공동 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해양 바이오·식품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운영원칙) 양 기관의 상호협력 교류에 있어 필요한 특별규정은 별도로 합의하여 제정하고, 기타사항은 해당기관의 제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협동연구)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이 연구사업을 함께 도출하여 학·연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다.

1. 해양 바이오·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및 개발
2.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 및 개발
3. 기타 실무협의에 따른 연구 및 개발

제4조(학·연 협동연구 석·박사과정) 양 기관은 고급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강릉원주대 대학원내에 학·연 협동연구 석·박사과정(이하 “학·연 협동과정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학·연 협동과정의 교과과정 중에서 기초 및 전공과목은 원칙적으로 강릉원주대 대학원에서 운영하고, 실험 실습 및 연구는 원칙적으로 환동해 산업연에서 행한다.
2. 학위논문 지도는 해당 전공분야의 양 기관 교수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학·연 협동과정의 입학전형 및 전형절차, 교육과정의 운영,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, 학위논문 제출과 심사 등 학위취득에 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강릉원주대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인력교류) 양 기관은 교원 및 연구원을 연구협력 또는 교육을 위하여 사전에 기간 등을 정하여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학생) 활동해산업연은 강릉원주대 학·연협동과정 학생을 활동해산업연의 학생 연구원으로 활용 할수 있다.

제7조(학술정보교류)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교류에 적극 협력한다.

제8조(시설, 장비, 공간의 공동 활용) 양 기관은 연구 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양 기관의 장비, 시설 및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결과의 귀속) 상대기관의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도출된 연구결과 (know-how, 지식재산권, 보고서 명의 등)는 상대기관에 귀속되며, 협동연구결과는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한다.

제10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및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비용부담)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안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2조(효력 및 협약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, 유효기간은 본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 부터 3년으로 하며, 양 기관 중 일방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년이 연장된다.

제13조(해석)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9월 24일

국립 강릉원주대학교
총장 반선섭

서명 : 반선섭

활동해산업연구원
원장 김태영

서명 : 김태영